

2020년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4.(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심장섭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제4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주요내용: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함.
- 회의결과: 신창환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35건(안건번호 제2020-37189호~3792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32189호~37208호는 네이버 블로거가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 방송물을 각각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7209호~3724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영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37246호~3728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시리얼넘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92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59건(안건번호 제2020-2414호~2472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8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51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51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개 안건 (4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 제4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8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1,984개 URL의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32435호~3441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8개, 총 1,984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성원영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성원영 전문위원: 금번 회의는 의결 안건이 네 개임. 제1호 안건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이며, 제2호 안건은 저작권법 제133조
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이고, 제3호 안
건은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
구 심의이며, 제4호 안건은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임.

○ 제1호: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 성원영 전문위원: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
견을 구함.
- A 위원: 신창환 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추천함.
- B 위원: 동의함.
- C 위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만장일치로 신창환 위원을 제3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함.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3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창환 위원을 선출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위너브라더스', '유니버설픽처스', '소니픽처스',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컴퍼니', 'FOX', '어도비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소송대리 내지 보호활동, 조정,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님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위원, C 위원, A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없음. 이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해 보호원

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안전번호 제2020-37189호~37920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1,035건임. 금일 심의대상은 '도도과일' 등 36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것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심의안전 목록과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7189호~37208호는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총 20개 게시물임. 참고로 민원인 신고 건인 한 데드카피 안전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있음. 해당 안전은 네이버 블로그에 일본 음원, 방송물,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신고 내용, OSP 정보, 불법복제물 정보, 게시물 정보, 침해증거자료 등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37189호~3720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네이버 블로그는 누구나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 A 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별다른 이견 없음.
- C 위원: 특별히 부결에 이르는 이유가 없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189호~3720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전 목록과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7209호~3724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총 37개 게시물임. 웹하드에서 일본 만화, 영화 불법복제물을 각각 판매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신고 내용, OSP 정보, 불법복제물 정보, 게시물 정보, 침해증거자료 등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37209호~3724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정현순 사무처장: 안전번호 제2020-37233호에 접속하여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 이용자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을 18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5. 14. 개봉한 최신 영화임.
- 정현순 사무처장: 180 포인트는 곧 180원임. 안전번호 제2020-37235

호에 접속하여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 이용자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를 16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년 최신 영화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웹하드 이용자는 해당 영화나 만화를 어디서 다운받아 판매 중인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VOD가 출시되면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VOD를 복제해 제공함. 국가별로 개봉 일자의 시차가 발생하면 해외 서버에서 복제하기도 함. 중국에서는 인기 있는 최신 영화의 경우 영화관에서 도촬한 캠버전을 판매하기도 함. 화질이 좋은 콘텐츠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복제한 것임. 번역은 DVD에서 추출하거나 자체적으로 번역하여 제공됨.

- 정현순 사무처장: 영화의 경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음. 전문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그룹이 따로 존재함.

- A 위원: 웹하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정현순 전문위원: 정식 등록된 웹하드 업체는 약 40개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는 웹하드 모두 정식 등록된 웹하드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그러함. 등록되지 않은 웹하드는 형사처벌 대상임.
- B 위원: 저는 현재 2,000~3,000원의 돈을 지불하고 웹하드에서 영화 등을 이용하고 있음.
- 정현순 사무처장: 웹하드 제휴 콘텐츠는 최소 1,000 포인트에 판매 중임. 10 포인트나 20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는 콘텐츠는 모두 불법 복제물임.
- B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37233호나 제2020-37235호는 각각 180 포인트, 160 포인트에 판매 중임. 이는 모두 제휴가 아닌지?
- 정현순 사무처장: 제휴 콘텐츠가 아님. 제휴 등록을 하려면 기술적 조치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DNA 값이 있는 제휴 콘텐츠를 올리면 등록되는 반면 제휴가 아닌 콘텐츠는 등록되지 않음. 문제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저작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예를 들어, 외국 영화사들이 DNA 값을 제공하지 않은 영화는 필터링이 되지 않음.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37224호~37245호는 모두 게시자가 동일인임. 해당 게시자에 시정권고를 했는데, 이후에 불법복제물을 재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지? 시정권고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계정 소유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3번의 경고를 함. 3번 이상 경고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한다면 1개월 동안 계정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함.

- A 위원: 실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있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작년 기준 약 230건의 계정정지를 함. 하지만 여전히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콘텐츠가 많이 제공되고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음. 가결 의견임.
- C 위원: 가결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209호~3724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전 목록과 검토보고서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2020-37246호~3728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50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 신고 내용, OSP 정보, 불법복제물 정보, 게시물 정보, 침해증거자료 등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검토보고서의 해당 안전포에서 불법복제물, 게시자, 게시물수, 버전, 저작권사, 무료 체험용 제공 여부, 크랙 포함 혹은 자동인증 등에 관한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37246호~37286호를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전문위원은 비고란의 '자동인증', '크랙포함', '키젠포함', 'Repack', 'Portable(무설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전부 비슷한 개념임. 쉽게 말해 프로그램 해킹임. 권리자들은 홈페이지에서 30일 혹은 7일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막아 놓는 접근통제조치를 해 놓았음. 즉 무료 체험 기간이 지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음. 그런데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 불법복제물은 해당 기간이 지나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무력화하고 있음. 기간 제한 없이 정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크래킹 프로그램이라고 함. 크래킹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복제물은 아님. 정품 소프트웨어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인데, 크래킹을 구동해서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cracked 됨.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인증은 프로그램 자체에 손을 대서 마치 정품처럼 구동되게 하는 것임.
- 정현순 사무처장: Repack은 패키징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임. 트라이얼 버전의 패키징을 임의로 조작하고 Repackaging해서 저작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조작

인 셈임.

- 성원영 전문위원: 키젠은 Key Generator를 의미함. 무료 체험 기간이 만료되면 일련의 라이선스 키가 필요한데, 이러한 일련번호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활성화에 필수적인 정보가 키젠임.
- A 위원: 시리얼 넘버는 어도비사에서 정식 제공하는 것인지? 시리얼 넘버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소프트웨어 구매 시 생기는 인증 번호임. 불법복제물은 이러한 인증 번호가 사전에 입력되어 있어 정품처럼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임.
- B 위원: 시리얼 넘버를 카피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시리얼 넘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시리얼 넘버 등을 복제한 후 웹하드 사이트에 판매 중인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각주 5번은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주요 관리자 홈페이지를 정리해 놓은 것임.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와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음.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Office 1개월 무료 평가판을 제공 중임. 1개월이 지나면 1년에 119,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임.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30일간 사용 가능한 한글오피스 2020 체험판을 제공 중임.

- 성원영 전문위원: 공학 교수, 컴퓨터 업계 전문가이신 기존 심의위원
 님들께서 권리자들이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무료 체험용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고, 일종의 Lock-in Effect, 즉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한 후 이를 지속하는 현상인 자물쇠 효과를
 노리고 있으므로 상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 권리자
 들은 상업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의 현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함. 이용허락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권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그러한 트렌드에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검토의견의 접근방식을 바꾸었음. 다시 말해 저작권
 자가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복제·전송자의 심의대상
 게시물 제공 행위가 불법복제물 전송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
 당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긴 하나 심의대상 게시물은 ‘기술적 보
 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 또는 복제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
 물등”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인 크래킹 프로그램은 무료 체험용 프로그
 램을 30일 이상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인지 아니면 정품 프로그
 램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정품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지 여부는 확인되
 지 아니함. 웹하드에서 다양한 버전을 판매하고 있는데, 보호원에서
 하나하나 소프트웨어 감정을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트라이얼 버전은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이를 크래킹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웹하드 이용자는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A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크래킹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안전번호 제2020-37246호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웹하드 이용자는 소프트웨어와 크래킹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판매하고 있음. 제공되고 있는 파일명은 'FL Studio 12.3 Producer Edition + Crack'임. 크래킹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 중임.

- B 위원: 게시물 제목도 '크랙포함'이라고 하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예컨대 안전번호 제2020-37246호의 경우 'FL Studio 12.3 Producer Edition'이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 데드카피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크래킹 프로그램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임.

- A 위원: 돈을 지불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에서 시리얼 넘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정품 프로그램과 심의대상 게시물이 동일한지 여

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 C 위원: 크래킹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에 의해 제공된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렇지 않음. 말씀드린 부분은 크래킹 프로그램이 아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2개의 프로그램을 묶어 제공 중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권리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음. 설치했을 때 육안상 구별할 수 없거나 파일이 정상 작동하기 때문임. 데드카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필요함.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심의 안전을 모두 감정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에 대한 안전이 많으면 수천 개인데, 한 건 한 건 모두 감정하려면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뿐더러 보호원에 소프트웨어 감정 기능이 없음.
- A 위원: 그렇다면 게시자들은 본인이 제공하는 파일이 정품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하는 것인지?
- B 위원: 그러함. 또한 이용자들이 그렇게 믿고 웹하드 불법복제물을 구입함.
- A 위원: 정품이 아닌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구입할 이유는 없어 보임.
- 정현순 사무처장: 정품처럼 구동되기 위해서는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서 인증 받거나 광고가 제거되어야 함.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은

광고가 삽입되어 있는데, 정품 프로그램이나 웹하드 불법복제물은 광고가 따로 없음.

- B 위원: 정품과 같은 프로그램임을 이용자와 게시자가 서로 암암리에 인정하는 것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는 중요해 보이지 않음. 게시자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닌 정품처럼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정권고의 대상은 불법복제물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므로 보호원이 데드카피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기존 심의위원회는 동일한 복제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권리자들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보호원은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복제물만 모니터링하고 있음.
- 정현순 사무처장: 외관상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정품인증 등을 회피할 수 있도록 크랙이 포함되어 있다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간주하고 시정권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크랙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시물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님.

- A 위원: 크랙포함, 자동인증, 패치포함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그러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의 제공은 시정권고 대상이라는 판단이 가능함. 다만 모니터링을 하면 처음 접하는 소프트웨어가 다수 발견됨. 작은 규모인 권리자의 라이선스 정책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불가능함.
- B 위원: 디자인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앎.
- 성원영 전문위원: 작곡이나 설계 프로그램도 그렇다고 들음.
- A 위원: 극소수 게시자들이 게시물을 업로드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임.
- 정현순 사무처장: 게시자는 정품과 같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100~20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것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과 함께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제품키를 제공하고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 C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크래킹 프로그램, 라이선스 키 등의

제공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는 이르지 않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의 전송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됨.

- 성원영 전문위원: 실제로 심의대상 게시물을 다운로드 받아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할 것인데, 보호원은 그 직전 단계에서 채증을 하고 있음. 저작권법은 시정권고 대상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B 위원: 특별한 의견 없음. 가결함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7246호~372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37287호~37920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37287호~3792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PC로 확인하면 서) 기존 심의안건과 다른 안건들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앞서 보고한 안건은 민원인 신고 건임. 자체 모니터링은 데드카피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안들임.
- A 위원: 불법 복제한 영상, 음악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보임. 코로나19 이후로 시정권 고 심의 안건이 많아졌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구체적으로 조사된 통계 자료는 없음.
- 정현순 사무처장: 외국 연구자료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불법복제물의 양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음.
- C 위원: '중점'으로 표시된 안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안건임. 대부분의 심의대상 안건이 '중점'에 해당함. 보호원의 온라인대응팀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점 저작물 선정 기준 관련한 내부 지침이 있음. 최신 저작물이거나, 권리자의 신고가 있었거나, 민원이 있었던 경우 '중점' 안건으로 표시됨.
- A 위원: 일반인 제보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일반인 신고 건은 '중점'과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Case by case임.
- B 위원, C 위원, A 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PC로 확인하면서)안건번호 제2020-37287호~37920호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불법복제물로 판단되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7287호~3792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37189호~3792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o 제3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제3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21쪽부터 3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2414호~2472호는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8개의 안전은 가결하고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51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51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4개 안전(4개 안전은 부결 사유가 중복)}을 부결함.

○ 제4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4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37쪽부터 4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2435호~34418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9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11.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김연희